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

**\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<b>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</b>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	
부적격 소명자료		○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**다자녀가구 특별공급**

**\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<b>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</b>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다자녀 특별공급	○		복합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직계비속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(※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)
부적격 소명자료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신청자가 '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'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	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1/2) **신혼부부 특별공급**

**\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<b>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</b>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·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[※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 3년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]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본 안내문 2 Page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참고하여 발급)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·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
부적격 소명자료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○		자산보유 확인서류 (추첨제 당첨자)	본인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(본 안내문 2 Page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참고하여 발급)
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·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·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기타	-	·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	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2/2) **신혼부부 특별공급**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신혼부부 특별공급 (추첨제)	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)</li> <li>※ 부동산 미소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"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 없음" 화면 출력 (크롬, 엣지 등 브라우저 메뉴에서 '인쇄' 또는 [Ctrl+P] 입력)</li> <li>- 반드시 회원가입 및 회원 로그인 후 전체화면 출력 (비회원 조회 불인정)</li> </ul> </li> </ul>
		○	개별공시지가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</li> <li>-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</li> </ul>
		○	토지등기부등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</li> <li>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→ 등기부 등본 출력</li> </ul>
		○	시가표준액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</li> <li>- 위택스 →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</li> </ul>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 
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</li> <li>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</li> <li>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감증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해당직장/세무서</li> </ul>
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감증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</li> <li>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</li> <li>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</li> <li>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
자영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li>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</li> <li>• 법인등기부등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서</li> <li>• 등기소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</li> <li>•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</li> <li>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국민기초생활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센터</li> </ul>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</li> <li>•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사업자 확인각서</li> <li>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</li> <li>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</li> <li>※ 1)의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사 홍보관 비치</li> <li>• 국제청 훌텍스</li> </ul>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산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후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</li> <li>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[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등</li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1/2)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

**\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<b>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</b>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생애최초 특별공급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[※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 3년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○	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[(본 안내문 2 Page)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]
	○		소득입증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[(본 안내문 2 Page)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]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•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"미혼인 자녀"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부적격 소명자료		○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○	자산보유 확인서류 (추첨제 당첨자)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(본 안내문 2 Page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참고하여 발급)
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2/2)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생애최초 특별공급 (추첨제)	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)</li> <li>※ 부동산 미소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"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 없음" 화면 출력 (크롬, 엣지 등 브라우저 메뉴에서 '인쇄' 또는 [Ctrl+P] 입력)</li> <li>- 반드시 회원가입 및 회원 로그인 후 전체화면 출력 (비회원 조회 불인정)</li> </ul> </li> </ul>
		○	개별공시지가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</li> <li>-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</li> </ul>
		○	토지등기부등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</li> <li>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→ 등기부 등본 출력</li> </ul>
		○	시가표준액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</li> <li>- 위택스 →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</li> </ul>

■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

구분	해당 자격	제출서류	발급처
소득세납부 입증 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거 5개년도 소득세납부 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</li> <li>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</li> <li>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세무서</li> <li>② 해당직장</li> <li>③ 해당직장/세무서</li> </ul>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 
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</li> <li>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</li> <li>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해당직장/세무서</li> </ul>
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</li> <li>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</li> <li>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지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
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/li> </ul>	• 해당직장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</li> <li>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</li> </ul>	• 해당직장
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</li> <li>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</li> </ul>	• 세무서
자영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</li> <li>• 법인등기부등본</li> <li>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무서</li> <li>• 등기소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</li> <li>•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</li> <li>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세무서</li> </ul>
국민기초생활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li> </ul>	• 주민센터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</li> <li>•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직장</li> <li>• 국민연금공단</li> </ul>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사업자 확인각서</li> <li>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</li> <li>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</li> <li>※ 1)의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사 홍보관 비치</li> <li>• 국세청 홈택스</li> </ul>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</li> <li>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[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등</li> <li>• 해당직장</li> </ul>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**노부모부양 특별공급**

**\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<b>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</b>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부적격 소명자료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•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(※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)
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(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